



시 보



제1513호 2021. 9. 6.(월)

규 칙

○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 2

고 시

○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8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9월 6일

목 포 시 장 김 종 식

목포시 규칙 제 1822 호

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본문 중 “2~3명(침실 1인용 1명, 침실 2인용 1~2명)”을 “1세대(호실) 1명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주계약서 적용례)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입주자 준수사항)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.

다만, 도배장판에 한해 사용자 부담으로 수리 할 수 있으나 퇴소 시 그 비용을 허가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2. 입주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3.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.

제6조(해약조건) ① “을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- 1.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2. 입주보증금, 월사용료, 공공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
- 3.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, 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한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약되었을 때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사하여야 한다.

제7조(해약통보) “갑”과 “을”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증금의 반환)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예치한 입주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. 다만, “을”이 계약불이행으로 “갑”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

제9조(원상회복) “을”은 이사 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허가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해석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다.

제11조(입주예정일) 입주개시 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하며, 사전통고 없이 기일내에 “을”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“갑” “을”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 년 월 일

갑 : 목 포 시 장 (인)

을 : 입 주 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<p>제3조(입주자 선정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생활관 세대별 입주 인원은 2 ~3명(침실 1인용 1명, 침실 2인 용 1~2명)으로 한다. 다만, 침실 2인용의 1인 입주허가는 아파트 입주율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 다.</p> <p>[별지 제11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 약 계 약 서</p> <p>(재산의 표시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 재 지 : 목포시 옥암동 992번지 19호(개정 98. 2. 9 규 1237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생 활 관 : 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 표시 생활관을 입주함에 있어 입주허가자인 목포시장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입주자인 ○○○(이하 "을"이라 한다)간에 다음과 같이 입주허가계약을 체결한다.</p> <p>제1조 (입주허가 기간) 위 표시 생활관의 입주허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사용료) ①갑은 위 표시 생활관을 "을"에게 입주하게 하고 "을"은 아래 표시된 입주허가 기간 중 입주보증금, 월사용료 및 공공요금은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입주보증금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월 사용료 및 공공요금</td> <td colspan="2" style="width: 50%;">납 부 장 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갑"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갑"이 지정하는 장소</td> </tr> </table> <p>②"을"은 매월 일까지 전월분 월사용료를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월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"을"은 공동전기료, 상·하수도사용료, 정화조청소비, 승강기검 사 및 점검료등 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.<개정 98·2·9></p> <p>제3조 (임대료 등 변경) "갑"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 에서 필요시 입주보증금 및 월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 시에는 "을"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</p>	입주보증금	월 사용료 및 공공요금	납 부 장 소		원	"갑"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	"갑"이 지정하는 장소		<p>제3조(입주자 선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1세대(호실) 1명 으로 한다.</p> <p>[별지 제11호서식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 주 계 약 서</p> <p>(재산의 표시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소 재 지 : 목포시 옥암동 992번지 19호(개정 98. 2. 9 규 1237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생 활 관 : 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 표시 생활관을 입주함에 있어 입주허가자인 목포시장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입주자인 ○○○(이하 "을"이라 한다)간에 다음과 같이 입주허가계약을 체결한다.</p> <p>제1조 (입주허가 기간) 위 표시 생활관의 입주허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사용료) ①갑은 위 표시 생활관을 "을"에게 입주하게 하고 "을"은 아래 표시된 입주허가 기간 중 입주보증금, 월사용료 및 공공요금은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입주보증금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월 사용료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공공요금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납 부 장 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갑"이 지정하는 장소</td> </tr> </table> <p>※ 입주보증금, 월 사용료, 공공요금은 "갑"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</p> <p>②"을"은 매월 일까지 전월분 월사용료를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월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"을"은 공동전기료, 상·하수도사용료, 정화조청소비, 승강기검 사 및 점검료등 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.<개정 98·2·9></p> <p>제3조 (임대료 등 변경) "갑"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 공단 임대주 택 운용기준을 준용하여 입주보증금 및 월사용료를 조정할 수</p>	입주보증금	월 사용료	공공요금	납 부 장 소	원	원	원	"갑"이 지정하는 장소
입주보증금	월 사용료 및 공공요금	납 부 장 소															
원	"갑"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	"갑"이 지정하는 장소															
입주보증금	월 사용료	공공요금	납 부 장 소														
원	원	원	"갑"이 지정하는 장소														

제4조 (사용료 등 계산방법) ①사용료는 입주허가 계약서상 일주일로부터 계산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.<개정 98·2·9>

1. 1인당 월 사용료는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목포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
2. 사용자의 증감에 관계없이 1인당 월 사용료는 목포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3. 입주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.

②전력, 수도 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세대별 납부 금액으로 하되,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한다.

제5조 (입주자 준수사항) “을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.
2. 입주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3.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.

제6조 (계약조건) ①“을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1.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2. 입주보증금, 월사용료, 공공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
3.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, 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한 자

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약되었을 때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사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계약통보) “갑”과 “을”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보증금의 반환)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예치한 입주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. 다만, “을”이 계약불이행으로 “갑”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

제9조 (원상회복) “을”은 이사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허가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.

제10조 (해석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다.

제11조 (입주예정일) 입주개시 예정일은 199 년 월 일로 하며, 사전통고 없이 기일내에 “을”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“갑” “을”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있으며, 조정시에는 “을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 (사용료 등 계산방법) ①사용료는 입주허가 계약서상 일주일로부터 계산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.<개정 98·2·9>

1. 1인당 월 사용료는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목포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
2. 사용자의 증감에 관계없이 1인당 월 사용료는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3. 입주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.

②전력, 수도 등 공공요금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세대별 납부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.

③ 에어컨 냉매가스는 입주 세대가 충전하며 잔량 냉매가스 비용에 대해서는 충전비를 허가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제5조 (입주자 준수사항)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.
다만, 도배장판에 한해 사용자 부담으로 수리 할 수 있으나 퇴소시 그 비용을 허가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2. 입주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3.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을 동숙시킬 수 없다.

제6조 (계약조건) ①“을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1.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2. 입주보증금, 월사용료, 공공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
3.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, 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한 자

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약되었을 때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사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계약통보) “갑”과 “을”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보증금의 반환)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예치한 입주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. 다만, “을”이 계약불이행으로 “갑”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

제9조 (원상회복) “을”은 이사 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허가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.

제10조 (해석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다.

제11조 (입주예정일) 입주개시 예정일은 년 월 일

19 년 월 일

갑 : 목 포 시 장 (인)

을 : 입 주 자 ○ ○ ○ (인)

로 하며, 사전통고 없이 기일내에 “을”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“갑” “을”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갑 : 목 포 시 장 (인)

을 : 입 주 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인)

고시 제 2021-14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6일

목 포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

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 고시일	폐지 사유
붙임 참조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313)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< 불 입 >

연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 고시일	폐지 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숲나루길 172	2021. 9. 6.	건물 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87	2021. 9. 6.	건물 멸실
3	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91	2021. 9. 6.	건물 멸실
4	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93	2021. 9. 6.	건물 멸실
5	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95	2021. 9. 6.	건물 멸실